

사업장 설명회 자료
일시 : '06.8.16~22일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06. 8

환 경 부
대 기 관 리 과

나.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조정·보완함(안 별표 8)

- (1) 배출허용기준 신설·강화내용 : 발전시설 및 보일러 시설의 질소산화물 기준 강화, 입자상물질 배출량이 많은 탈사 및 선별·분쇄·주물사 처리시설에 대한 먼지 기준 강화, 고품화연료 제품(RDF, RTF) 사용시설 및 발전시설의 수은 기준 신설 등
- (2) 배출허용기준 완화내용 : 도장시설의 연속공정에 대한 탄화수소(THC), 폐염산재생시설에 대한 염화수소, 시멘트 소성시설의 염화수소 배출허용기준 등

다.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여 측정결과를 자동전송하는 사업장의 배출시설에 대한 초과부과금 산정기준 명확히 규정

라. 배출부과금 부과실적 보고주기의 완화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8 제1호 및 제2호를 별지와 같이 하며, 제4호나목 중 “부과함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부과하되 배출허용기준초과율별 부과 계수 및 위반횟수별 부과계수는 “1”로 한다”로 한다.

별표 16 제9호 배출공정중 “운송장비제조업, 조립금속제품제조업에 한한다”를 “운송장비제조업, 조립금속구조제조업 중 교량제조, 설치용 금속탱크제조 등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시설에 한한다”로 한다.

별표 34 제4호를 삭제하고, 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배출부과금부과 징수실적 및 체납처분 현황	연 2회	매반기종료 후 15일 이내	시·도지사
---------------------------	------	----------------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령안 주요내용

1. 추진배경

- 2010년 이후 적용할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예고 필요
 - 현행 허용기준(2005.1.1시행)은 2000년에 예고된 기준임
 - 금년 3월 종료된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2010년 이후 적용할 배출허용기준을 예고하기 위함임
- 91년 대기환경보전법 제정 후 15년간 현행 배출시설 유지
 - 지자체, 산업체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배출시설 재분류 필요성 제기
 - 반도체산업 등 첨단산업에 대한 대응 부족으로 대기오염물질 관리 한계

2. 추진경과

- 예고제 배출허용기준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
 - 대기환경보전법 배출허용기준 예고(안) 및 배출시설 분류체계개선을 위한 연구용역 실시(한국대기환경학회 : '05.5~'06.3)
- 배출허용기준(초안)마련 및 관련단체·업계 의견 수렴
 - 대한석유협회 등 10개 단체 및 남해화학(주) 등 50여개 업체와 사전 의견 조정
- 16개 관련단체와 배출허용기준(안) 협의 조정
 - 협의 조정 14개 단체, 미조정 2단체

- ※ 대한조선공업협회, 한국양회공업협회와는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대한조선공업협회는 기존의 THC 허용기준 완화, 한국양회공업협회는 질소산화물 기준 완화가 쟁점사항임

3. 대기배출허용기준 예고기준 개정

□ 대기환경기준이 강화된 질소산화물, 먼지 및 벤젠 등 주요 대기오염물질 허용기준 강화

- 질소산화물 다량 배출시설에 대하여는 최근 저감기술이 개발되어 상용화 되어 있는 점과 질소산화물이 광화학 스모그와 산성비 발생의 전구물질인 점에서 탈질시설(SCR, SNCR설치)을 설치하여야 하는 수준으로 강화
- 먼지는 백필터, 전기집진기 방지효율 수준의 방지시설을 설치한 시설은 현행기준을 유지토록 하고, 개선의 여지가 남아있는 시설에 대해서만 현행보다 20~30% 강화

□ 신규 산업시설과 사회적 이슈 시설에 대한 신규 배출허용기준 설정

- 신규 산업시설
 - 반도체 제조시설, 매립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 생활폐기물 고형연료(RDF, RPF) 사용 시설에 대한 신규기준 설정
- 사회적 이슈로 제기된 시설
 - 석탄 화력발전소, 시멘트 소성로 등 석탄사용시설에 대해 수은 배출허용기준 추가설정

□ 불합리한 배출허용기준의 합리적 조정

- 선박, 구조물 등 대형 도장시설의 THC(총탄화수소) 와 폐기물을 소각하는 시멘트 소성로의 Hcl 등 허용기준 완화

- 기타, 배출시설 간에 형평성이 맞지 않거나, 지나치게 완화되어 있는 기준, 적용하기가 명확하지 아니한 기준 등은 합리적으로 조정

4. 대기배출시설 분류체계 개정

□ 산업구조 및 여건 변화에 따른 배출시설 추가 또는 제외

- 반도체 제조시설, 매립가스 발전시설등 신생 산업시설 추가하고, 악취방지법의 분법에 따른 순수 악취발생시설 제외
-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의 원피저장시설, 석회적시설과 담배제조시설의 습점시설, 침향시설, 공기조화시설은 제외

□ 포괄적으로 규정된 배출시설은 특성에 따라 세 분류

-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은⇒ “제1차 금속제조시설”과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비, 운송장비, 가구제조시설”로 2분류
-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기초화합물 제조시설”과 “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을 ⇒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인산제조시설 제외)”, “무기안료·염료·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화학비료·인산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의약품 제조시설”, “기타 화학제품 제조시설”로 6분류
-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제조시설”과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중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 물질제조시설”을 ⇒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과 “합성고무, 플라스틱 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로 2분류
- 기존에 “기타시설”로 분류된 “발전시설”을 별도의 배출시설로 분류

□ 지자체 조례로 정 할 수 있는 시설 신설

- 시·도지사가 관할지역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규정된 배출시설 이외에 별도로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을 조례로 규정할 수 있도록 규정

□ 도표는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로 구분하고

- 배출시설 란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에 의한 시설과 모든 시설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시설 등 적용범위를 명시
- 대상 배출시설란에는 배출시설별 포함시설의 명칭, 최소 규모와 제외되는 시설을 명시
- 적용범위 란에는 한국산업표준분류번호 또는 모든 시설 적용 등 적용여부를 명확히 함

□ 비고 란에 고체연료 환산계수와 배출시설로 규정하지 않는 시설을 명기

<붙임 2>

[별표 3]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개정안(제5조 관련)

1. 배출시설은 각각의 원료(부 원료, 첨가제를 포함한다), 연료 투입지점부터 해당공정이 종료되는 지점까지 단위공정 전체를 말한다.
2. 배출시설 란의 1~22의 배출시설은 그 산업의 배출시설에만 적용하고, 23~27의 배출시설은 1~22의 배출시설 및 그 포함시설에 열거되지 아니한 시설을 포함한 모든 배출시설에 공통으로 적용한다.
3. 배출시설의 규모는 그 시설의 해당 규모(중량, 면적, 용적, 열량, 마력 등)를 말하고, 동일사업장에 규모 미만의 동종시설이 2개 이상 설치되어 시설 총 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이면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는 각 시설의 동력 소요량에 비례하여 산출한다.

배출시설	대상 배출시설	적용범위
1. 섬유제품 제조 시설	가. 동력 3마력이상의 선별(혼타)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m ³ 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kg이상 또는 용적 1m ³ 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라. 동력 10마력이상의 기모(식모)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1700
2. 가죽, 모피가공 및 모피제품, 신발 제조 시설	용적 3m ³ 이상의 도장, 염색, 접착 및 건조시설(유기 용제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1800~1900

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가. 용적 3m ³ 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의 석회로 시설, 가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100
4. 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석탄 코크스 제조시설(코크스로, 인출시설, 냉각시설을 포함한다. 단, 석탄 장입시설 및 코크스오븐가스 방산시설은 제외한다.), 석유 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10
5. 석유제품 제조 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용적 1m ³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의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시설(석유제품의 연소,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 황 회수 장치의 부산물 연소에 한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320
6.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용적 1m ³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의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시설(기초유기화합물의 연소, 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 황 회수장치의 부산물 연소에 한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 다. 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1
7. 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가. 용적 1m ³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용적 1m ³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의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연소시설(기초무기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2

	<p>화합물의 연소에 한한다), 촉매재생시설, 탈황시설</p> <p>다. 염산제조시설 및 폐염산 정제시설(염화수소 회수시설을 포함한다)</p> <p>라. 황산제조시설</p> <p>마. 형석의 용융·용해시설 및 소성시설 및 불소화합물제조시설</p> <p>바. 과인산암모늄 제조시설</p> <p>사. 인광석의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인산제조시설</p>	
8. 무기안료·염료·유연제 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무기안료·염료·유연제 기타 착색제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p>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3
9.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 시설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p> <p>다.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혼합시설, 반응시설, 정제시설, 농축시설 및 입자상물질 계량시설</p> <p>라. 질소화합물 및 질산제조시설</p>	한국표준 산업분류 2414
10. 의약품 제조 시설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p> <p>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의약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p>	한국표준 산업분류 2420

<p>11. 기타 화학제품 제조 시설</p>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다. 용적 30m³이상의 탄화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30</p>
<p>12. 화학섬유 제조시설</p>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화학섬유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가열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40</p>
<p>13. 고무 및 고무제품 제조시설</p>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연소시설(고무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다.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소련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 접착시설 라.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510</p>
<p>14. 합성고무, 플라스틱물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시설</p>	<p>가. 용적 1m³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p>	<p>한국표준 산업분류 2415 2520</p>

	<p>이상의 연소시설(플라스틱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p> <p>다.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소련시설, 분리시설, 정련시설</p> <p>라.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p>	
15.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 원료가공시설 포함)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유리제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10
16. 도자기·요업 제품 제조시설 (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소성 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하고, 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은 제외한다), 건조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20
17. 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 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소성 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시설(시멘트 양생 시설은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냉각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30
18.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 시설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제외)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혼합시설(습식은 제외한다), 용융·용해 시설, 소성 시설(예열시설을 포함한다), 건조 시설,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나.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 시설·탈판시설·방사 집면시설·절단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0
19. 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 ³ 이상의 건조시설, 선별시설, 혼합시설, 용융·용해시설	한국표준 산업분류

		2692
20 제1차 금속 제조시설	<p>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p> <p>(1) 시간당 300kW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p> <p>(2) 노상면적 45m² 이상의 반사로</p> <p>(3) 1회 주입 연료와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또는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m²이상의 용선로 또는 제선로, 용광로 및 관련시설(원료처리, 열풍로, 용선출탕시설. 단 고로슬래그 냉각시설은 제외한다.)</p> <p>(4)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도가니로</p> <p>(5)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m³ 이상의 전로, 정련로, 배소로 및 소결로 및 관련시설(원료 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을 포함한다), 환형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p> <p>나. 금속 표면 처리시설</p> <p>(1) 용적 1m³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p> <p>(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³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p> <p>(3)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m³이상의 주물사 처리시설(저장, 혼합, 코아제조, 및 건조, 주형 장입 및 해체,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p>	한국표준 산업분류 2700
21.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장 비,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	<p>가. 금속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p> <p>(1) 시간당 300kW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p> <p>(2) 노상면적 45m² 이상의 반사로</p>	한국표준 산업분류 2800~ 3600

	<p>(3) 1회 주입 원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도가니로</p> <p>(4) 연료 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m³ 이상의 전로, 정련로, 용융·용해로, 가열로, 열처리로(소둔로, 소려로를 포함한다), 전해로, 건조로</p> <p>나. 표면 처리시설</p> <p>(1) 용적 1m³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칼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p> <p>(2) 용적 5m³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건조시설을 포함한다.)</p> <p>(3)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 또는 용적 3m³이상의 금속 또는 가구의 표면처리용 건조시설(수세 후 건조시설은 제외한다)</p> <p>(4)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m³이상의 주물사 처리시설(저장, 혼합, 코아제조, 및 건조, 주형 장입 및 해체, 주물사 재생시설을 포함한다)</p> <p>(5)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중 용적 3m³이상의 증착, 식각시설</p>	
<p>22. 발전시설(수력, 원자력 발전시설 제외)</p>	<p>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kW이상의 발전용 내연기관(도저히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및 120kW이상의 발전용 매립가스 사용시설</p>	<p>한국표준 산업분류 4011</p>
<p>23.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p>	<p>가. 시간당 처리능력이 0.5m³이상의 폐수·폐기물 증발시설, 농축시설 및 용적 0.15m³이상의 폐수·폐기물 건조, 정제시설</p> <p>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폐기물 분쇄, 파쇄, 용융 시설</p> <p>다. 시간당 200kg 이상의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RDF, Refuse Drived Fuel)와 폐플라스틱 고형화연료(RPF, Refuse Plastic Fuel) 사용시설</p>	<p>1~22의 배출시설과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p>

	<p>라. 시간당 소각능력이 25kg이상의 폐수, 폐기물소각시설</p> <p>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이상이거나 용적 1m³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 또는 폐가스 소각보일러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의 폐가스 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배출억제·방지시설, 악취소각시설은 제외한다.)</p>	<p>시설에 적용</p>
<p>24. 일반보일러</p>	<p>가. 산업용, 업무용에 한하며 다른 배출시설에서 규정한 보일러는 제외한다.</p> <p>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kcal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kcal이상의 보일러</p>	<p>모든 배출 시설에 적용</p>
<p>25. 지름 1mm 이하인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발생시설</p>	<p>가. 동력 20마력이상의 연마, 제재, 제분, 선별, 분쇄, 탈사 및 탈청시설. 다만,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습식(원료의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된 경우를 포함한다) 및 당해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이동식을 제외한다.</p> <p>나. 동력 10마력이상의 고체 입자상 물질 이송(벨트 콘베이어) 시설(덮개, 살수, 방진벽 등으로 먼지 발생을 방지할 수 없는 시설에 한한다), 용적 50 m³ 이상의 고체 입자상물질 저장시설</p> <p>다. 용적 3m³이상 또는 동력 10마력이상의 고체 입자상물질 계량시설, 혼합시설(농산물 가공시설은 제외한다)</p>	<p>1~24의 배출시설과 그 포함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모든 배출 시설에 적용</p>

	<p>라. 처리능력이 시간당 100kg이상의 고체 입자상 물질 포장시설</p> <p>마.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p> <p>바. 용적 50m³이상의 유·무기산 저장시설, 유기 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켄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저장시설.</p> <p>사.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압착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p> <p>아. 상기 가~사의 배출시설 외에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이상 또는 용적 5m³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도장, 분리시설 포함), 기타로, 혼증시설, 산·알카리 처리시설, 소성시설</p>	
<p>26. 기타시설(상기 1~25의 배출시설로 분류되지 아니하는 시설로 당해물질에 한한다)</p>	<p>암모니아, 이황화탄소, 황화수소, 불소화물, 포름알데히드, 시안화수소 및 시안화물, 브롬 및 그 화합물, 벤젠, 페놀 및 그 화합물, 염소(수질정화용을 제외한다.) 및 그 화합물, 염화비닐, 탄화수소, 비소 및 그 화합물, 수은 및 그 화합물, 카드뮴 및 그 화합물, 납 및 그 화합물, 크롬 및 그 화합물, 구리 및 그 화합물, 니켈 및 그 화합물, 아연 및 그 화합물을 제조하거나 당해 오염물질을 발생·배출하는 모든 시설. 다만, 당해물질 배출허용기준의 30% 미만인 경우 배출시설에서 제외</p>	<p>(상기 1~25의 배출시설로 분류되는 경우에는 그 시설에 포함한다)</p>
<p>27. 조례로 정하는 시설</p>	<p>시·도지사가 관할지역내 대기오염 개선을 위하여 상기 1~28. 가 이외에 별도의 배출시설로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조례로 정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p>	

비고 :

1.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연료별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 산 계 수
무연탄	kg	1.00	유연탄	kg	1.34
코크스	kg	1.32	갈탄	kg	0.90
이탄	kg	0.80	목탄	kg	1.42
목재	kg	0.70	유황	kg	0.46
중유(C)	L	2.00	중유(A, B)	L	1.86
원유	L	1.90	경유	L	1.92
등유	L	1.80	휘발유	L	1.68
납사	L	1.80	엘피지	kg	2.40
액화 천연가스	Sm ³	1.56	석탄타르	kg	1.88
메타놀	kg	1.08	에타놀	kg	1.44
벤젠	kg	2.02	톨루엔	kg	2.06
수소	Sm ³	0.62	메탄	Sm ³	1.86
에탄	Sm ³	3.36	아세틸렌	Sm ³	2.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석탄가스	Sm ³	0.80
발생로가스	Sm ³	0.2	수성가스	Sm ³	0.54
혼성가스	Sm ³	0.60	도시가스	Sm ³	1.42
전기	kW	0.17			

*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kg당 발열량은 4,600kcal로 한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시행규칙 별표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건조시설중 옥내에서 태양열등을 이용하여 자연 건조시키는 시설을 제외한다.

4. 용적규모가 50,000m³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판 도장시설, 수상구조물 제작공정, 금속조립구조체 제조업 중 교량제조, 설치용 금속탱크 제조 등 야외구조물 완성품을 부분적으로 도장하는 야외도장시설, 제품의 길이가 100m이상인 제품의 야외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5. 배출시설 설치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사업장의 기존시설은 일련의 공정시설로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다만 동 규정 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 개정된 배출시설의 일련의 공정시설로 변경신고 하여야 한다.
6. 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붙임 3>

[별표 3]

현형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제5조 관련)

1. 금속의 용융·제련 또는 열처리시설
 - 가. 시간당 300KW 이상의 전기아크로(유도로를 포함한다)
 - 나. 노상면적 4.5㎡ 이상의 반사로
 - 다. 1회 주입연료 및 원료량의 합계가 0.5톤 이상의 용선로
 - 라. 1회 주입연료량이 0.5톤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도가니로
 - 마.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평로, 전로(순산소 상취전로를 포함한다), 배소로, 소결로, 가열로, 용융·용해로
 - 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용해로, 납의 제2차 정련용 또는 납의 관·판·선제조용 용해로
 - 사. 풍구(노복)면의 횡단면적 0.2㎡ 이상의 제선로(용광로를 포함한다)
 - 아. 용적 1㎡ 이상의 알루미늄 정련용 전해로
2. 금속의 표면처리시설
 - 가. 용적 1㎡ 이상의 도금시설, 탈지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화성처리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 이상의 금속표면처리용 건조시설
 - 다. 시간당 처리능력이 0.1톤 이상 또는 용적 1㎡ 이상의 주물사처리시설(코아제조시설을 포함한다)
3. 화합물 및 화학제품제조시설
 - 가. 기초화합물제조시설, 비료 및 질소화합물제조시설, 합성고무 및 플라스틱물질제조시설
 - (1) 용적 1㎡ 이상의 반응시설, 흡수시설, 응축시설, 정제시설(분리·증류·추출·여과를 포함한다), 농축시설, 표백시설
 - (2)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이거나 용적 1㎡ 이상의 연소시설(화학제품의 연소에 한한다), 용융·용해시설, 소성시설, 가열시설, 건조시설, 회수시설
 - (3) 용적 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
 - 나. 기타 화학제품제조시설
 -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2) 용적 30 m^3 이상의 탄화시설
- 다. 화학섬유제조시설
 - (1) 상기 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2) 분당 방사속도가 50m 이상의 방사시설
- 4. 고무 및 플라스틱제품제조시설
 - 가. 위의 제3호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나. 용적 3 m^3 이상 또는 동력 10마력 이상의 혼합시설(소련시설을 포함한다), 분리시설, 정련시설
 - 다. 폴리프로필렌 또는 폴리에틸렌 외의 물질을 원료로 사용하는 동력 250마력 이상의 성형시설(압출·압연 또는 사출방법에 의한 시설을 포함한다)
 - 라. 용적 3 m^3 이상 또는 동력 20마력 이상의 가황시설(열과 압력을 가하여 제품을 성형하는 시설을 포함한다)
- 5. 석유정제품제조시설
 - 가. 위의 제3호가의 각목에 해당되는 규모 이상의 시설
 - 나. 용적 1 m^3 이상 또는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촉매재생시설, 황회수장치의 연소시설
- 6. 코크스 및 관련제품제조시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인 코크스로
- 7. 비금속광물제품제조시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 m^3 이상의 소성시설(나무를 연료로 사용하는 도자기 제조시설을 제외한다),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시멘트양생시설을 제외한다)
 -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0.5톤 이상의 냉각시설(서냉시설을 제외한다)
 - 다. 용적 3 m^3 이상의 혼합시설, 고체입자상물질 계량시설
 - 라. 석면 및 암면제품제조시설의 권취시설·압착시설·탈판시설·방사집면시설·절단시설
 - 마. 산처리시설(부식시설을 포함한다)
- 8. 가죽·모피가공 및 모피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10 m^3 이상의 원피저장시설(염장원피 전용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 또는 용적 3 m^3 이상의 석회적시설, 건조시설(도장마무리용시설에 한한다)
- 9. 제재 및 목재가공시설
 - 가. 동력 20마력 이상의 목재가공연마시설(자동대패기·밀링기·샌딩기·그라인딩기·몰더기에 한한다)
 - 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재시설

- 다.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건조시설(도포 및 도장마무리용 건조시설에 한한다)
- 10.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제조시설
 - 가. 용적 3m³ 이상의 증해시설·표백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30kg 이상의 석회로시설·가열시설
- 11. 담배제조시설
 - 가. 용적 3m³ 이상의 습점시설, 건조시설, 침향시설·순환식조화시설
 - 나. 처리능력이 시간당 50kg 이상의 권련시설, 권취·포장시설
- 12. 음식료품제조시설, 단백질 및 배합사료제조시설(유기질비료제조시설을 포함한다)
 - 가.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³ 이상의 증자시설(훈증시설을 포함한다), 자숙시설, 발효시설, 증류시설, 산·알카리처리시설, 건조시설(진공냉동건조시설을 제외한다)
 - 나. 동력 20마력 이상의 제분시설
 - 다. 동력 70마력 이상의 도정시설
- 13. 섬유제품제조시설
 - 가. 동력 3마력 이상의 선별(혼타)시설
 - 나. 연료사용량이 시간당 60kg 이상 또는 용적 5m³ 이상의 다림질(텐트)시설 및 코팅시설(실리콘·불소수지 외의 유연제 또는 방수용 수지를 사용하는 시설에 한한다)
 - 다. 연료사용량이 일일 20kg 이상 또는 용적 1m³ 이상의 모소시설(모직물에 한한다)
 -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기모(식모)시설
- 14. 공통시설
 - 가. 화력발전시설, 열병합발전시설, 120KW 이상의 발전용내연기관(도서지방용·비상용 및 수송용을 제외한다)
 - 나. 이동식시설·가스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副生)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연료로 사용하는 시설을 제외한 시간당 증발량 0.5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kcal 이상의 보일러. 다만, 환경부장관이 고체연료사용금지지역으로 고시한 지역 내에서는 시간당 증발량 0.2톤 이상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kcal 이상의 보일러
 - 다. 소각시설(소각보일러를 포함한다)
 - (1) 소각능력이 시간당 25kg 이상의 폐기물소각시설·폐수소각시설

(2) 소각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의 폐가스소각시설(별표 18의 규정에 적합한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억제·방지시설과 폐기물매립시설에서 발생하는 가스를 소각하는 시설을 제외한다)

- 라. 동력 10마력 이상의 연마시설(제9호가, 목재가공연마시설을 제외한다), 선별시설, 탈사시설 및 탈청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마. 동력 20마력 이상의 분쇄시설. 다만, 습식 및 이동식을 제외한다.
- 바. 용적 50m³ 이상의 유·무기산저장시설, 유기화합물(원유·휘발유·납사·알킨족·알킨족·방향족·알데히드류·케톤류가 50% 이상 함유된 경우에 한한다)저장시설, 고체입자상물질저장시설
- 사. 용적 5m³ 이상 또는 동력 3마력 이상의 도장시설
- 아. 포장능력이 시간당 100kg 이상의 고체입자상물질포장시설
- 자. 시간당 연료사용량이 50kg 이상 또는 용적이 2m³ 이상인 기타 로
- 차. 시간당 처리능력 0.5m³ 이상의 폐수·폐기물증발시설, 폐수·폐기물농축시설 및 시간당 처리능력 0.15m³ 이상의 폐수·폐기물건조시설

15. 삭제 <1998.2.21>

비 고

1. 위의 표에 규정된 규모 미만의 시설로서 동일사업장에 2개 이상의 동종시설이 설치되어 시설의 총규모가 당해 각 항목에 규정된 규모 이상일 경우의 시설은 배출시설에 포함한다. 다만, 저장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가스류·전기 또는 경질유(경유·등유·부생연료유1호(등유형)·휘발유·납사·정제연료유(「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6의 열분해방법 또는 감압증류방법으로 재생처리한 정제연료유에 한한다))만을 사용하여 간접 가열하는 연소시설은 당해 시설에 한하여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다만, 원유정제과정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하는 가스를 사용하는 석유정제시설 또는 금속의 용융·제련·열처리시설의 연소시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3. "연료사용량"이라 함은 연료별사용량에 무연탄을 기준으로 한 고체연료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정한 양을 말하며, 고체연료환산계수는 다음 표와 같다.

고체연료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산계수	연료 또는 원료명	단 위	환산계수
무 연 탄	kg	1.00	유 연 탄	kg	1.34
코 크 스	kg	1.32	갈 탄	kg	0.90
이 탄	kg	0.80	목 탄	kg	1.42
목 재	kg	0.70	유 황	kg	0.46

중 유(C)	L	2.00	중 유(A, B)	L	1.86
원 유	L	1.90	경 유	L	1.92
등 유	L	1.80	휘 발 유	L	1.68
납 사	L	1.80	엘 피 지	kg	2.40
액화천연가스	S/m ³	1.56	석 탄 타 르	kg	1.88
메 타 놀	kg	1.08	에 타 놀	kg	1.44
벤 젠	kg	2.02	틀 루 엔	kg	2.06
수 소	S/m ³	0.62	메 탄	S/m ³	1.86
에 탄	S/m ³	3.36	아 세 틸 렌	S/m ³	2.80
일산화탄소	S/m ³	0.62	석 탄 가 스	S/m ³	0.80
발생로가스	S/m ³	0.2	수 성 가 스	S/m ³	0.54
혼 성 가 스	S/m ³	0.60	도 시 가 스	S/m ³	1.42
전 기	KW	0.17			

*위 표에 없는 연료의 고체연료환산계수는 사업자가 국가 또는 지방중소기업청 등 국가공인기관에서 발행받아 제출하는 증빙서류에서 제시하는 당해 연료의 발열량을 무연탄발열량으로 나누어서 산정한다. 이 경우 무연탄 1kg당 발열량은 4,600kcal로 한다.

4. "이동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이 당해 사업장의 부지경계선을 벗어나는 시설을 말한다.
5. 삭제 <1999.10.22>
6. 건조시설 중 옥내에서 태양열 등을 이용하여 자연건조시키는 경우의 시설을 제외한다.
7. "습식"이라 함은 당해 시설을 이용하여 수중에서 작업을 하거나 물을 분사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인장·압축·절단·비틀림·충격·마찰력 등을 이용하는 조분쇄기(크랏사·카드 등)를 사용하는 석재분쇄시설의 경우에는 물을 분무시켜 작업을 하는 경우에 한한다) 또는 원료속에 수분이 항상 15% 이상 함유되어 있는 경우를 말한다.
8. "원료"라 함은 제품제조에 필요한 주원료와 기타 각종 첨가제 등 부원료를 합한 것을 말한다.
9. 배출시설의 규모는 당해 시설의 최대시설용량(최대시설규모)을 말하고, 하나의 동력원에 2개 이상의 시설이 연결되어 동시에 가동되는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시설의 수로 그 동력원을 나누어 산출하고, 기타의 경우에 각각의 시설의 규모는 연결된 동력원의 규모로 산출한다.
10. 용적규모가 50,000m³ 이상인 도장시설과 선박건조공정의 야외구조물 및 선체외관 도장시설, 수상구조물제작공정의 야외구조물 도장시설은 배출시설에서 제외한다.
11. 위의 표의 각호에 규정된 배출시설에서 발생된 대기오염물질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작업을 통해 밀폐된 상태로 배출시설을 거쳐 대기 중으로 배출되는 경우로서 당해 배출구가 설치된 최종시설에 대하여 허가 또는 신고(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당해 일련 또는 연속된 공정에 설치된 모든 배출시설에 대해 허가 또는 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2. "고체입자상물질"이라 함은 입자의 크기가 지름 1mm 이하인 것에 한한다.
13. 배출시설의 분류 및 제조업의 범위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며, 위의 표 제14호 공통시설 중 라목 내지 차목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광업, 제조업, 자동차수리업, 운수업, 폐기물수집 및 처리업, 폐수처리업의 시설에 대하여만 적용한다.

<붙임 4>

[별표 8]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기준 개정안(제12조 관련)

1.가스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가.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이하
	나.무기안료·염료·유연제·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 시설	30(12)이하
	라.기타시설	50이하
일산화탄소 (ppm)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50(12)이하 200(12)이하
	나.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50(12)이하 200(12)이하
염화수소 (ppm)	가.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 포함) 및 저장시설	6이하
	나.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 포함) 및 저장시설	15이하
	다.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이하
	라.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20(12)이하
	마.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 및 용해시설	2(13)이하
	바.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이하
	사.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이하
	아.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인 고형화 연료제품 전용시설	20(12)이하
	자.기타시설	6이하
	향산화물 (SO ₂ 로서)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24,760,000kcal 이상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인 시설 1)2004.12.31 이전 설치시설 가)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기타지역 2)2005. 1. 1 이후 설치시설 (나)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24,760,000kcal 미만 인 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2) 0.5%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3)기타지역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나)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180(4)이하 270(4)이하 10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540(4)이하 180(6)이하 150(6)이하
	나.발전시설 (1)1996. 6.30 이전 설치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 400MW 이상 2)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 이상 3)설비용량 100MW 미만 (나)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설비용량 100MW이상 2)설비용량 100MW미만 (2)1996. 7. 1 이후 설치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나)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4)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100(4)이하 150(4)이하 180(4)이하 100(6)이하 150(6)이하 70(4)이하 80(6)이하 180(6)이하 150(6)이하
	다.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 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배소로·용광로 및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가)2006.12.31. 이전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소결로의 연소시설 (가)2006.12.31. 이전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70이하 180이하 270(15)이하 180(15)이하
	라.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270(8)이하
	마.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 축시설	150이하
	바.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황회수시설 (2)가열시설 (가) 0.3%이하 저황유사용지역 (나)그 밖의 지역 (3)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7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400(12)이하
	사.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이하
	아.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30(12)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50(12)이하 70(12)이하
	자.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 시설(예열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006.12.31 이전 설치시설 (가)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이상인 시설 (나)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미만인 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가)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이상인 시설 (나)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미만인 시설	30(13)이하 150(13)이하 20(13)이하 50(13)이하
	차. 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포함) 중 용 융·용해로 (1) 2006.12.31 이전 설치시설 (2) 2007.1.1 이후 설치시설	270(13)이하 180(13)이하
	카.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 기물 고회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회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회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회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50(12)이하
	타.기타시설	400이하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경질유 제외)사용시설 (가)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24,760,000kcal 이상 인 시설 1)2001. 6.30. 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나)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24,760,000kcal 미만인 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4)기타시설	150(4)이하 70(4)이하 200(4)이하 100(4)이하 150(6)이하 70(6)이하 150(6)이하 250이하
	나.발전시설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내연기관 1)가스터빈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디젤기관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설비용량 100MW이상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100(15)이하 70(15)이하 600(15)이하 300(15)이하 100(4)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설비용량 100MW미만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가)1996. 6.30 이전 설치시설 (나)1996. 7. 1 이후 설치시설 (3)기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빈 포함)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70(4)이하 150(4)이하 70(4)이하 150(6)이하 80(6)이하 100(15)이하 50(15)이하 70(4)이하 50(4)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중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이하 100(12)이하
	라.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중 (1)배소로 (2)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3)소결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이후 설치시설 (4)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열풍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이후 설치시설	150이하 100이하 220(15)이하 120(15)이하 200(11)이하 150(11)이하
	마.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1)가열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증발량이 50톤/시간 이상인 시설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증발량이 50톤/시간 미만인 시설 (나)기체연료사용시설 1)증발량이 50톤/시간 이상인 시설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증발량이 50톤/시간 미만인 시설 (2)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4)이하 70(4)이하 200(4)이하 150(4)이하 100(4)이하 150(4)이하 200(12)이하
	바.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포함) 중 용융·용해시설 (1) 개별배출 용량이 100톤/일 이상인 시설 (2) 개별배출 용량이 100톤/일 미만, 10톤/일 이상인 시설 (3) 개별배출 용량이 10톤/일 미만인 시설	200(13)이하 250(13)이하 350(13)이하
	사.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시설(예열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270(13)이하 250(13)이하
	아.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이하
	자.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이하 100(12)이하
	차.기타시설	200이하
이황화탄소 (ppm)	모든 배출시설	30이하
포름알데히드(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황화수소 (ppm)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1)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인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2(12)이하 10(12)이하
	나.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가열·탈황 및 폐가스소각시설	6이하
	다.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시설	5이하
	라.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중(소각보일러포함)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12)이하 10(12)이하
	마.기타시설	10이하
불소화물 (F로서) (ppm)	가.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의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용융·용해시설	5(13)이하
	나.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의 습식인산제조시설,복합비료제조시설, 과인산암모늄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제조시설	5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2(12)이하 3(12)이하
	라.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 식각시설 포함)	5이하
	마.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3이하
	바.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2(12)이하 3(12)이하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1월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시설	
	사.기타시설	3이하
시안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ppm)	모든 배출시설	5이하
벤젠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0이하
페놀화합물 (C ₆ H ₅ OH) (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 ³)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1(12)이하
	나.발전시설(고체연료사용시설)	0.1(6)이하
	다.제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이하
	라.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이하
	마.기타시설	5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5(12)이하
	나.기타시설	3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1996. 6.30.이전 설치시설	200이하
	(2)1996. 7. 1. 이후 설치시설	
	(가)과상중합반응시설	50이하
(나)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150이하	
(다)기타시설	10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가.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포함)	30이하
	나.비연속식 도장시설	120이하

- 비고 : 1.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하며, 유리용해시설에서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경우와 폐가스소각시설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 및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은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2.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은 해당시설의 연료사용량 중 고형화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3. 황산화물(SO₂로서)의 가목에서 “저황유 사용지역”이라 함은 영 제34조제1항에 의하여 고시한 지역을 말한다.
4. 황산화물(SO₂로서) 다음의 각 시설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본문 적용 예외 인정시설	본문 적용 예외인정 허용기준 및 인정기간
(1) 가목(1)에 해당하는 시설 중 「석유	(1) 배출허용기준 적용을 제외한다.

및 석유대체 연료사업법」 제2조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등유, 경유만을 사용하는 시설	
(2) 나목(1)(가)3)시설과 나목(2)(가)시설 중 열병합 발전시설	(2) 가목(1)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집단에너지사업법에 의한 한국지역난방공사의 열병합 발전시설 중 2000.12.31.이전 설치시설은 150(4)ppm이하, 청주지역에서는 2005.1.1. 이후 설치시설은 50(4)ppm이하를 적용한다.
(3) 나목(1)(가)1)2)3)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3)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이하를 적용한다. (4) 2013.12.31까지 1호기, 2호기, 3호기는 180(4)ppm이하, 한다.
(4) 나목(1)(가)1)2)3)해당시설 중 남제주화력발전소	(5) 2013.12.31까지 270(4)ppm이하를 적용한다.
(5) 나목(1)(나)2)가) 해당시설 중 보령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	(6) 2010.12.31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이하를 적용한다
(6) 나목(1)(나)2)가) 해당시설 중 삼천포화력발전소	(7) 나목(1)(나)2)나)의 기준을 적용한다. 다만, 1호기, 2호기, 3호기, 4호기는 70(6)ppm이하를, 5호기, 6호기는 140(6)ppm 이하를 적용한다.
(7) 나목(1)(나)2)나) 해당시설 중 호남화력발전소	(8) 2010.12.31까지 1호기, 2호기는 270(6)ppm이하를 적용한다.
(8) 나목(2)(나) 해당시설	(9) 국내 생산 무연탄 사용시설은 120(6)ppm 이하를 적용하고 영흥화력발전소 1호기, 2호기는 45(6)ppm 이하를, 3호기, 4호기는 25(6)ppm 이하를 적용한다.
(9) 나목(1)(나)1)가) 해당시설 중 동해화력발전소	(10) 1호기 및 2호기는 1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10) 나목(1)(나)2) 해당시설 중 대구염색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	(11) 1호기는 2014.12.31 까지, 2호기, 3호기는 2015.12.31 까지 270(6)이하를 적용한다.

5. 질소산화물(NO₂로서) 다음의 각 시설에 대하여는 본문의 배출허용기준에 우선하여 각 시설별로 설정된 예외인정 허용기준을 적용한다.

적용 예외 인정	적용 예외 인정의 허용기준
(1) 가목(1)(가)1) 해당시설 중 연료교체 후 탈황설비를 설치운영중인 시설	(1) 2012.12.31까지 250(4)ppm이하를 적용한다.
(2) 나목(1)(가)1) 해당시설중 제주도의 기존시설	(2) 400(15)ppm이하를 적용한다.
(3) 나목(1)(나)1)가) 해당시설 중 울산화력발전소	(3) 4호기, 5호기, 6호기는 150(4)ppm이하를 적용한다. (4) 2013.12.31까지 1호기, 2호기, 3호기는 250(4)ppm이하를 적용한다.
(4) 나목(1)(나)1)가) 해당시설 중 영남화력발전소	(5) 2013.12.31까지 1호기는 250(4)ppm, 2호기는 1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5) 나목(1)(나)2)가) 해당시설중 남계 주화력발전소	(6) 2010.12.31까지 1호기, 2호기는 250(4)ppm이하를 적용한다.
(6) 나목(2)(가)1) 해당시설 중 호남화력발전소, 영동화력발전소, 서천화력발전소	(7) 호남화력발전소1호기, 2호기는 2010.12.31까지 350(6)ppm이하를 적용한다. (8) 영동화력발전소1호기, 2호기는 2013.12.31까지 350(6)ppm이하를 적용한다. (9) 서천화력발전소1호기, 2호기는 2013.12.31까지 350(6)ppm이하를 적용한다.
(7) 나목(2)(나) 해당시설 중 영흥화력발전소	(10) 1호기, 2호기는 55(6)ppm 이하를 적용하고 3호기, 4호기는 15(6)ppm 이하를 적용한다.
(8) 나목(3)(가)2) 해당시설 중 천연가스 또는 매립가스를 사용하는 발전용량 10MW이하의 린번엔진 열병합발전시설	(11) 2007.12.31까지 125(13)ppm 이하를 적용한다.
(9) 나목(3)(나)1)을 열병합발전시설 중 카본블랙 제조시설의 폐가스 재이용시설	(12) 2009.12.31까지 300(13)ppm 이하를 적용하고, 2010.1.1부터 250(4)ppm 이하를 적용한다.
(10) 나목(2)(가) 해당시설 중 대구염색단지 열병합발전소	(13) 1호기는 2014.12.31 까지, 2호기, 3호기는 2015.12.31 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11) 나목(2)(가) 해당시설 중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14) 2013.12.31 까지 350(6)ppm 이하를 적용한다.
(12) 다목(1) 해당시설 중 폐수소각처리시설	(15) 80(12)ppm 이하를 적용한다.

6. 탄화수소(THC로서)의 가목(1)의 “연속식 도장시설”이라 함은 1일 8시간 이상 연속하여 가동하는 시설이며, 가목(2)의 “비연속식 도장시설”이라 함은 연속식 도장시설 이외의 시설을 말한다.

7. 탄화수소(THC로서)의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중 자동차제작자의 도장시설(건조시설을 포함하며, 유기용제사용량 15톤/년 이상인 시설에 한한다)에 대한 배출허용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종	생산규모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		
		기존시설		신규시설
		2005년 1월 1일부터 2007년 12월 31일까지	2008년 1월 1일 이후	2005년 1월 1일 이후
승용자동차	(1) 5,000대/년 미만	100g/m ³ 이하	70g/m ³ 이하	50g/m ³ 이하
	(2) 5,000대/년 이상	90g/m ³ 이하	60g/m ³ 이하	45g/m ³ 이하
소형상용자동차	(3) 5,000대/년 미만	145g/m ³ 이하	110g/m ³ 이하	65g/m ³ 이하
	(4) 5,000대/년 이상	135g/m ³ 이하	100g/m ³ 이하	60g/m ³ 이하
트럭	운전석	(5) 2,500대/년 미만	130g/m ³ 이하	95g/m ³ 이하
		(6) 2,500대/년 이상	120g/m ³ 이하	90g/m ³ 이하

차 체	(7) 2,500대/년 미만	145g/m ³ 이하	110g/m ³ 이하	80g/m ³ 이하
	(8) 2,500대/년 이상	135g/m ³ 이하	100g/m ³ 이하	70g/m ³ 이하
버 스	(9) 2,000대/년 미만	370g/m ³ 이하	250g/m ³ 이하	200g/m ³ 이하
	(10) 2,000대/년 이상	350g/m ³ 이하	225g/m ³ 이하	150g/m ³ 이하
차체부품		350g/m ³ 이하	225g/m ³ 이하	150g/m ³ 이하

주) 1) 차종의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

차 종	분 류 기 준
승 용 자 동 차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 5인 이하의 자동차
소형상용자동차	차량 총중량 3.5톤 미만으로 승차인원 15인 이하의 자동차 또는 적재중량 1톤 이하의 자동차
트럭 운전석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적재중량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
트럭 차 체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적재중량 1톤을 초과하는 화물자동차의 운전석을 제외한 차체
버 스	차량 총중량 3.5톤 이상으로 승차인원 15인을 초과하는 자동차
차 체 부 품	상기 분류기준에 따른 차종의 차체부품

8.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라 함은 당해 년.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포함하며, “이후 설치”이라 함은 당해 년.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 입자상물질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먼지 (mg/Sm ³)	<p>가. 일반보일러</p> <p>(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증발량이 15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92,850,000kcal 이상인 시설 1)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2)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0(4)이하</p> <p>(나) 증발량이 20톤/시간 이상 15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0kcal 이상 92,850,000kcal 미만인 시설 1) 2006.12.31. 이전 설치시설 40(4)이하 2) 2007. 1. 1. 이후 설치시설 30(4)이하</p> <p>(다) 증발량이 5톤/시간 이상 2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이상 12,380,000kcal 미만인 시설 50(4)이하</p> <p>(라) 증발량이 5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미만인 시설 70(4)이하</p> <p>(2) 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증발량이 2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0kcal 이상인 시설 30(6)이하 (나) 증발량이 5톤/시간 이상 2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이상 12,380,000kcal 미만인 시설 50(6)이하 (다) 증발량이 5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미만인 시설 70(6)이하</p>	
	<p>나. 발전시설</p> <p>(1) 액체연료사용시설 (가) 설비용량 100MW 이상인 시설 1)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30(4)이하 2)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0(4)이하</p> <p>(나) 발전용량 100MW 미만인 시설 1)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40(4)이하 2)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0(4)이하</p> <p>(다) 발전용 내연기관 40(15)이하</p> <p>(2) 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발전용량 500MW 이상인 시설 1)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30(6)이하 2)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0(6)이하</p> <p>(나) 발전용량 500MW 미만인 시설 1)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40(6)이하 2)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30(6)이하</p> <p>(3) 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40(13)이하</p>	
	<p>다. 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p> <p>(1) 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0(12)이하</p> <p>(2) 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40(12)이하</p> <p>(3) 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70(12)이하</p>	
	<p>라. 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p> <p>(1) 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p>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가)1998.12.31 이전 설치시설 (나)1999. 1. 1 이후 설치시설	20이하 10이하
	(2)용선로, 용광로, 용선 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로, 용융·용광로, 도가니로 및 전해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50이하 20이하
	(3)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가)소결로 (나)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시설, 환형로	30(15)이하 40이하
	(4)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용해로, 전해로	40(11)이하
	(5)주물사처리시설, 탈사 및 탈청시설	50이하
	마.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건조시설	40(10)이하
	마.코크스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1)석탄 코크스 제조시설 (가)코크스로 (나)인출, 건식냉각, 저장시설 (2)석유코크스제조시설 중 (가)연소시설 (나)인출,냉각,저장시설	20(7)이하 20이하 30(4)이하 20이하
	사.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이하
	아.석유제품 제조 및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시설 (2)가열시설 및 촉매재생시설 (3)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4)이하 30(4)이하 50(12)이하
	자.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포함)의 용융· 용해시설 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개폐형 전기로를 제외한다) (2)기타시설	50(13)이하 50이하
	차.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소성시설 또는 냉 각시설	50(16)이하
	카.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1)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2001. 6.30. 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냉각시설(직접배출에 한함)	40(13)이하 30(13)이하 40이하
	타.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석면제품제조가공시설 중 (1)방사·집면 및 탈판시설 (2)기타시설	30이하 70이하
	파.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 포함) 및 부속 건조시설	50이하
	하.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용적 1m ³ 이상의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중착,식각시설 포함)	50이하
	거.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물질 포장·저장·혼합·이송(벨 트콘베이어, 엘리베이터),탈사 및 탈청시설	50이하
	너.선별 및 분쇄시설	50이하
	더.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	

오염물질	배출시설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허용기준
	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12)이하 40(12)이하
	러.금속의 표면처리시설	40이하
	머.기타시설	100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mg/Sm ³)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0.02(12)이하 0.1(12)이하 0.2(12)이하
	나.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0.02(12)이하 0.1(12)이하
	다.기타시설	1.0이하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0.2(12)이하 1.6(12)이하 5(12)이하
	나.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용해로·용광로, 도가니로, 전해로	10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0.2(12)이하 0.1(12)이하
	라.기타시설	5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	0.5(12)이하
	나.기타시설	1.0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20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비산먼지 (mg/Sm ³)	모든 배출시설	0.5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 비고 : 1. 적용기간 및 배출허용기준란의 ()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말하며, 다음의 시설에 대하여는 표준산소농도(O₂의 백분율)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 가. 폐가스소각시설중 직접연소에 의한 시설과 촉매반응을 이용하는 시설
 - 나. 먼지의 마목 및 카목(시멘트제조시설을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시설중 열풍을 이용하여 직접 건조하는 시설
 - 다. 공기 대신 순산소를 사용하는 유리용해시설
2. 일반보일러에 적용되는 배출가스량 산정은 시설용량으로 한다. 다만, 시설의 고장 등을 대비하여 허가를 받거나 신고하여 예비로 설치된 시설의 시설용량은 포함하지 아니한다.
 3.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폐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은 해당시설의 연료사용량 중 고형화연료제품 사용비율이 30% 이상인 시설을 말한다.
 4. 집단에너지사업법의 규정에 의한 지역난방 열병합발전시설중 영·제3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청정연료외의 연료사용을 인정받은 시설(안산지역)에 대하여는 먼지에 관하여 20(4)mg/Sm³ 이하의 기준을 적용하고, 청주지역시설에 대하여는 2001년 4월 14일부터 25(4)mg/Sm³ 이하를 적용한다.
 5. 먼지의 나목(2)에 해당하는 시설중 영흥화력발전소 제1호기 및 제2호기는 20(6)mg/Sm³ 이하, 제3호기 및 제4호기는 5(6)mg/Sm³ 이하를 각각 적용한다.
 6. 배출시설란에서 “이전 설치시설”이라 함은 당해 년.월.일 이전에 배출시설을 설치중인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포함하며, “이후 설치”이라 함은 당해 년.월.일 이후에 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받은 시설 및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을 말하며 다만, 배출시설을 교체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배출허용기준 신규 대비표

□ 가스상 및 입자상 물질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암모니아 (ppm)	가.화학비료제조시설	50이하	다.화학비료, 인산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20이하
	나.안료 및 염료제조시설	70이하	나.무기안료·염료·유연제·기타 착색제 제조시설	20이하
	다.기타시설	100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 시설	30(12)이하
			라.기타시설	50이하
일산화탄소 (ppm)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50(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50(12)이하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0(12)이하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300(12)이하	(2)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0(12)이하
	나.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0(12)이하	나.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중 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00(12)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50(12)이하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0(12)이하	
염화수소 (ppm)	가.염산제조시설	6이하	가.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염산 제조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 포함) 및 저장시설	6이하
	나.폐염산재생시설	15이하	나.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폐염산 정제시설(염산, 염화수소 회수시설 포함) 및 저장시설	15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인산제조시설	2이하		
	라.화학비료제조시설	10이하		
	마.금속의 표면처리시설 중 산처리시설	5이하	다.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의 표면처리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리 처리시설	5이하
	바.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40(12)이하 50(12)이하	라..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20(12)이하
	사.유리 및 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융 및 용해시설	2이하	마.사.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 및 용해시설	2(13)이하
	아.기타시설	6이하	바..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기타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5(13)이하
			사..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시설 중 증착, 식각시설 및 표면처리시설	5이하
			아.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20(12)이하
			카.기타시설	6이하
	황산화물(SO ₂ 로서)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5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1)저황유 사용지역 가)1.0% 이하 나)0.5% 이하 다)0.3% 이하 2)기타지역 (나)배출가스량 5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1)저황유 사용지역 가)1.0% 이하 나)0.5% 이하 다)0.3% 이하 2)기타지역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	270(4)이하 27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540(4)이하 270(4)이하 180(4)이하 540(4)이하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24,760,000kcal 이상인 시설 1)2004.12.31 이전 설치시설 가)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나)기타지역 2)2005. 1. 1 이후 설치시설 (나)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24,760,000kcal 미만인 시설 1) 0.3% 이하 저황유 사용지역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료 혼합시설 포함) (가)고체연료사용 규제지역 (나)기타지역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250(6)이하	2) 0.5% 이하 저황유 사용 지역 3)기타지역	270(4)이하 540(4)이하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기타고체연료 사용시설	500(6)이하 150(6)이하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 2001. 6.30 이전 설치시설 (나) 2001. 7. 1 이후 설치시설	180(6)이하 150(6)이하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50(6)이하 150(6)이하		
	나.발전시설 (1)기존시설(1996년 6월 30일까지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또는 1996년 6월 30일 이전에 설치되었거나 설치중인 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 400MW 이상 2)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 이상 3)설비용량 100MW 미만 (나)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 포함) 1)국내에서 생산되는 무연탄을 사용하는 시설 가)설비용량 100MW 이상 나)설비용량 100MW 미만 2)유연탄 사용시설 가)설비용량 500MW 이상 나)설비용량 500MW 미만 (2)신규시설(기존시설을 증설·개축하는 시설과 1996년 7월 1일 이후 환경영향평가협의를 요청한 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나)고체연료사용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4)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15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150(6)이하 270(6)이하 100(6)이하 270(6)이하 70(4)이하 80(6)이하 270(6)이하 180(6)이하	나.발전시설 (1)1996. 6.30 이전 설치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설비용량 400MW 이상 2)설비용량 400MW 미만 100MW 이상 3)설비용량 100MW 미만 (나)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혼합시설포함) 1)설비용량 100MW이상 2)설비용량 100MW미만 (2)1996. 7. 1 이후 설치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나)유연탄 및 국내생산 무연탄 사용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크스 사용시설 (4)기타 고체연료사용시설	100(4)이하 150(4)이하 180(4)이하 100(6)이하 150(6)이하 70(4)이하 80(6)이하 180(6)이하 150(6)이하
다.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리시설 중 배소로·용광로 및 용선로	300이하	다.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의 용융·용해 또는 열처리시설 (1)배소로·용광로 및 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가)2006.12.31. 이전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70이하 180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소결로의 연소시설 (가)2006.12.31. 이전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70(15)이하 180(15)이하
	라.황산제조시설	300(8)이하	라.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 중 황산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270(8)이하
	마.화학비료 제조시설 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350(4)이하	마.화학비료, 인산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혼합·반응·정제 및 농축시설	150이하
	바.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1)탈황시설 및 페가스소각시설 (2)가열시설 (가)저황유사용지역 1)1.0% 이하 2)0.5% 이하 3)0.3% 이하 (나)그 밖의 지역 (3)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0(4)이하 270(4)이하 27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500(12)이하	바.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중 (1)황회수시설 (2)가열시설 (가) 0.3%이하 저황유사용지역 (나)그 밖의 지역 (3)중질유 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270(4)이하 180(4)이하 270(4)이하 400(12)이하
	사.코크스제조시설	150(7)이하	사.코크스 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150(7)이하
	아.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70(12)이하 100(12)이하	아.폐수·폐기물·페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50(12)이하 70(12)이하
	자.시멘트제조시설 중 소성시설 (1)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이상인 시설 (2)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미만인 시설	30(13)이하 200(13)이하	자.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006.12.31 이전 설치시설 (가)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이상인 시설 (나)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미만인 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가)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이상인 시설 (나)크링커생산량 200,000톤/년 미만인 시설	30(13)이하 150(13)이하 20(13)이하 50(13)이하
			차.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 포함) 중 용융·용해로 (1)2006.12.31 이전 설치시설	270(13)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2007.1.1. 이후 설치시설	50(13)이하
	차.기타시설	500이하	카.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 (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 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50(12)이하
			타.기타시설	400이하
질소산화물 (NO ₂ 로서) (ppm)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100,000m ³ /시 간 이상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나)배출가스량 10,000m ³ /시 간 이상 10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다)배출가스량 10,000m ³ /시 간 미만인 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 크스사용시설 (4)기타시설	250(4)이하 70(4)이하 250(4)이하 200(4)이하 250(4)이하 250(6)이하 150(6)이하 200(6)이하 250이하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경질유 제외)사용 시설 (가)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24,760,000kcal 이상인 시 설 1)2001. 6.30. 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나)증발량이 4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24,760,000kcal 미만인 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 이후 설치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3)국내에서 생산되는 석유코 크스 사용시설 (4)기타시설	150(4)이하 70(4)이하 200(4)이하 100(4)이하 150(6)이하 70(6)이하 150(6)이하 250이하
	나.발전시설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 내연기관 1)가스터빈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디젤기관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설비용량 100MW 이상	250(13)이하 70(13)이하 600(13)이하 300(13)이하	나.발전시설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내연기관 1)가스터빈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디젤기관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설비용량 100MW이상	100(15)이하 70(15)이하 600(15)이하 300(15)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설비용량 100MW 미만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가)기존시설 1)1989년 12월 31일 이전에 설치된 시설 2)1990년 1월 1일 이후 설 치된 시설 (나)신규시설 (3)기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 내연기관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250(4)이하 70(4)이하 250(4)이하 70(4)이하 350(6)이하 150(6)이하 80(6)이하 50(13)이하 50(13)이하 150(4)이하 50(4)이하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설비용량 100MW미만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 (가)1996. 6.30 이전 설치시설 (나)1996. 7. 1 이후 설치시설 (3)기체연료사용시설 (가)발전용 내연기관(가스터 빈 포함)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나)기타 발전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100(4)이하 70(4)이하 150(4)이하 70(4)이하 150(6)이하 80(6)이하 100(15)이하 50(15)이하 70(4)이하 50(4)이하
	다.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 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80(12)이하 150(12)이하 150(12)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 중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 상인 시설 (2)소각용량 2톤/시간 미만인 시설	70(12)이하 100(12)이하
	라.금속용융·제련 및 열처리 시설 중 (1)배소로 (2)용광로 및 용선로 (3)소결로 (4)가열로	200이하 100이하 220(15)이하 200(11)이하	라.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 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용 해 또는 열처리시설 중 (1)배소로 (2)용선로의 연소가스시설 (3)소결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이후 설치시설 (4)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 조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이후 설치시설	150이하 100이하 220(15)이하 120(15)이하 200(11)이하 150(11)이하
	마.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1)가열시설및폐가스소각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배출가스량 1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가)기존시설	250(4)이하	마.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저장 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 중 (1)가열시설 (가)액체연료사용시설 1)증발량이 50톤/시간 이상 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00(4)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나)신규시설 2)배출가스량 1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나)기체연료사용시설 1)배출가스량 1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배출가스량 1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2)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70(4)이하 250(4)이하 180(6)이하 100(6)이하 180(6)이하 200(12)이하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중발량이 50톤/시간 미만인 시설 (나)기체연료사용시설 1)중발량이 50톤/시간 이상인 시설 가)2001. 6.30.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이후 설치시설 2)중발량이 50톤/시간 미만인 시설 (2)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70(4)이하 200(4)이하 150(4)이하 100(4)이하 150(4)이하 200(12)이하
	바.유리제품제조시설 중 용해로	350(13)이하	바.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 (1)용융·용해시설의 개별배출용량이 100톤/일 이상인 시설 (2)용융·용해시설의 개별배출용량이 100톤/일 미만, 10톤/일 이상인 시설 (3)용융·용해시설의 개별배출용량이 10톤/일 미만인 시설	200(13)이하 250(13)이하 350(13)이하
	사.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트제조시설 중 소성로	350(13)이하	사.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예열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270(13)이하 250(13)이하
	아.기타시설	200이하	아.코크스 제조시설 및 관련제품 저장시설 중 연소시설	250(7)이하
			자.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품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품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차.기타시설	70(12)이하 100(12)이하 200이하
이황화탄소(ppm)	모든 배출시설	30이하	모든 배출시설	30이하
포름알데히드(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황화수소(ppm)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2(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1)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12)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2(12)이하 10(12)이하	인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10(12)이하
	나.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중 가열·탈황 및 폐가스소각시설	6이하	나.석유제품 제조시설 및 저장 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 시설 중 가열·탈황 및 폐가 스소각시설	6이하
	다.펄프제조시설	5이하	다.펄프·종이 및 종이제품 제 조시설	5이하
			라.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 중(소각보일러포함)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 (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 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12)이하 10(12)이하
	라.기타시설	10이하	마.기타시설	10이하
불소화물 (F로서) (ppm)	가.도기·자기·토기·구조점토 및 내화물 제조시설 중 용 융·용해 및 소성시설	5(16)이하	가.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의 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5(13)이하
	나.습식인산제조시설,복합비료 제조시설, 인광석·형석의 용융·용해 및 소성시설, 불 소화합물제조시설	5이하	나.기초무기화합물 제조시설과 화학비료 및 질소화합물 제 조시설의 습식인산제조시설, 복합비료제조시설, 과인산암 모늄제조시설, 인광석·형석 의 용융·용해 및 소성시설, 불소화합물제조시설	5이하
	다.과인산암모늄제조시설	4이하		
	라.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 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2(12)이하 2(12)이하 3(12)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2(12)이하 3(12)이하
	마.기타시설	3이하	라.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 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 시설 중 표면처리시설(증착, 식각시설 포함) 마.제1차금속 제조시설, 조립금 속제품 제조시설의 표면처리 시설 중 탈지시설, 산·알칼 리시설, 화성처리시설, 건조	5이하 3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시설, 불산처리시설, 무기산 저장시설	
			마.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12)이하 3(12)이하
			사.기타시설	3이하
시아나화수소 (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브롬화합물 (Br로서) (ppm)	모든 배출시설	5이하	모든 배출시설	5이하
벤젠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30이하	모든 배출시설(내부부상 지붕형 또는 외부부상 지붕형 저장시설을 제외한다)	20이하
페놀화합물 (C ₆ H ₅ OH) (ppm)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수은화합물 (Hg로서) (mg/Sm ³)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0.1(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1(12)이하
	나.기타시설	5이하	나.발전시설(고체연료사용시설)	0.1(6)이하
			다.제1차금속 제조시설 중 소결로,	0.1(15)이하
			라.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시멘트 소성시설	0.1(13)이하
마.기타시설		5이하		
비소화합물 (As로서) (ppm)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0.5(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및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연료제품(RPF) 전용시설	0.5(12)이하
	나.기타시설	3이하	나.기타시설	3이하
염화비닐 (ppm)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가)피상중합반응시설 (나)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200이하 50이하 150이하	이염화에틸렌·염화비닐 및 PVC제조시설 중 중합반응시설	
			(1)1996. 6.30.이전 설치시설	200이하
			(2)1996. 7. 1. 이후 설치시설	
			(가)피상중합반응시설	50이하
(나)유화중합 및 공중합 반응시설	150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다)기타시설	10이하	시설 (다)기타시설	10이하
탄화수소 (THC로서) (ppm)	도장시설(건조시설 포함) (1)배출가스량이 1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2)배출가스량이 1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50이하 100이하	가.연속식 도장시설(건조시설과 분무, 분체, 침지도장시설 포함) 나.비연속식 도장시설	30이하 120이하
먼지 (mg/Sm ³)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배출가스량 20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나)배출가스량 30,000m ³ /시간 이상 20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다)배출가스량 6,000m ³ /시간 이상 3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라)배출가스량 6,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배출가스량 30,000m ³ /시간 이상인 시설 (나)배출가스량 6,000m ³ /시간 이상 30,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다)배출가스량 6,000m ³ /시간 미만인 시설	30(4)이하 20(4)이하 50(4)이하 80(4)이하 150(4)이하 100(4)이하 30(6)이하 40(6)이하 80(6)이하	가.일반보일러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증발량이 15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92,850,000kcal 이상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이후 설치시설 (나)증발량이 20톤/시간 이상 15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0kcal 이상 92,850,000kcal미만인 시설 1)2006.12.31.이전 설치시설 2)2007. 1. 1.이후 설치시설 (다)증발량이 5톤/시간 이상 2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이상 12,380,000kcal미만인 시설 (라)증발량이 5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3,095,000kcal 미만인 시설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증발량이 20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 12,380,000kcal 이상인 시설 (나)증발량이 5톤/시간 이상 20톤/시간 미만인 시설 또는 시간당 열량 3,095,000kcal 이상 12,380,000kcal미만인 시설 (다)증발량이 5톤/시간 또는 시간당 열량3,095,000kcal 미만인 시설	30(4)이하 20(4)이하 40(4)이하 30(4)이하 50(4)이하 70(4)이하 30(6)이하 50(6)이하 70(6)이하
	나.발전시설		나.발전시설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설비용량 100MW 이상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나)발전용량 100MW 미만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다)발전용 내연기관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발전용량 500MW 이상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나)발전용량 500MW 미만인 시설 1)기존시설 2)신규시설	 40(4)이하 20(4)이하 50(4)이하 20(4)이하 40(13)이하 40(6)이하 20(6)이하 50(6)이하 30(6)이하	(1)액체연료사용시설 (가)설비용량 100MW이상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나)발전용량 100MW미만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다)발전용 내연기관 (2)고체연료사용시설(액체연료 혼합시설 포함) (가)발전용량500MW 이상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나)발전용량 500MW미만인 시설 1)2001. 6.30.이전 설치시설 2)2001. 7. 1. 이후 설치시설 (3)매립가스 사용시설(10MW 이상인 시설)	 30(4)이하 20(4)이하 40(4)이하 20(4)이하 40(15)이하 30(6)이하 20(6)이하 40(6)이하 30(6)이하 40(13)이하
	다.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30(12)이하 80(12)이하 100(12)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20(12)이하 40(12)이하 70(12)이하
	라.금속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1)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가)기존시설(1998년 12월 31일 이전) (나)신규시설(1999년 1월 1일 이후) (2)용광로·용선로 및 배소로 (3)소결로	 20이하 15이하 50이하 50(15)이하	라.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속제품, 기계, 기기, 운송장비, 가구 제조시설의 용융 및 제련시설 또는 열처리시설 중 (1)전기아크로(유도로 포함) (가)1998.12.31 이전 설치시설 (나)1999. 1. 1 이후 설치시설) (2)용선로,용광로 및 용선예비처리시설, 전로, 정련도, 용융·용광로,도가니로 및 전해로 (가)2006.12.31.이전 설치시설 (나)2007. 1. 1. 이후 설치시설 (3)소결로, 배소로, 환형로 (가)소결로설	 20이하 10이하 50이하 20이하 30(15)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4)가열로		70(11)이하	(나)원료장입, 소결광 후처리 시설, 환형로 (4)가열로, 열처리로, 소둔로, 건조로, 도가니로, 제선로, 전로, 용해로, 전해로 (5)주물사처리시설, 탈사 및 탈청시설	40이하 40(11)이하 50이하
마.화학비료 제조시설 또는 인산 및 그 화합물제조시설 중 소성시설·건조시설		50(10)이하	마.화학비료, 인산 및 질소화합물 제조시설 중 소성시설·건조시설	40(10)이하
바.코크스제조시설		50(7)이하	바.코크스제조시설 및 저장시설 (1)석탄 코크스 제조시설 (가) 코크스로 (나) 인출, 건식냉각, 저장시설 (2)석유코크스제조시설 중 (가)연소시설 (나)인출,냉각,저장시설	20(7)이하 20이하 30(4)이하 20이하
사..아스콘제조시설 중 건조시설		50(10)이하	사.아스팔트제품 제조시설 중 건조·선별·혼합시설	50(10)이하
아.석유정제 및 석유화학제품 제조시설 (1)축매재생시설 (2)탈황시설 (3)가열시설 (4)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50(6)이하 50(6)이하 50(4)이하 100(12)이하	아.석유제품 제조 및 저장시설, 기초유기화합물 제조시설 (1)황회수시설 및 폐가스소각 시설 (2)가열시설 및 축매재생시설 (3)중질유분해시설의 일산화탄소 소각보일러	30(4)이하 30(4)이하 50(12)이하
자.유리 및 유리제품 제조시설의 용융 및 용해시설 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개폐형 전기로를 제외한다) (2)기타시설		50(13)이하 50이하	자.유리·유리제품 제조시설(재생용 원료가공시설포함)의 용융·용해시설 중 (1)연속식 탱크로 또는 전기로(상부개폐형 전기로를 제외한다) (2)기타시설	50(13)이하 50이하
차.도기·자기·토기·구조점토 및 내화물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소성시설 또는 냉각시설		50(16)이하	차.도자기·요업제품 제조시설 중 용융·용해·소성시설 또는 냉각시설	50(16)이하
카.시멘트·석회 및 프라스트 제조시설 (1)건조시설 및 소성시설 (가)기존시설 (나)신규시설 (2)냉각시설		50(13)이하 40(13)이하 50이하	카.시멘트·석회·플라스터 및 그 제품 제조시설 중 (1)소성시설(예열시설 포함), 용융·용해시설, 건조시설 (가)2001. 6.30. 이전 설치시설 (나)2001. 7. 1. 이후 설치시설 (2)냉각시설(직접배출에 한함)	40(13)이하 30(13)이하 40이하
타.석면제품제조가공시설 중 (1)방사·집면 및 탈판시설		30이하	타.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석면 제품제조가공시설 중 (1)방사·집면 및 탈판시설	30이하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2)기타시설	70이하	(2)기타시설	70이하
	파.기타시설	100이하	파.입자상물질 발생시설의 도장 시설(분무·분체·침지도장 시설, 자동차정비업의 경우 동력을 이용한 연마시설 포함) 및 부속 건조시설	50이하
			하.조립금속제품 제조시설의 반도체 및 기타 전자부품 제조 시설 중 용적 1m ³ 이상의 표면가공 및 처리시설(증착, 식각시설 포함)	50이하
			거.연마·연삭시설, 고체입자상 물질 포장·저장·혼합·이송(벨트콘베이어, 엘리베이터), 탈사 및 탈청시설	50이하
			너.선별 및 분쇄시설	50이하
			더.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20(12)이하 40(12)이하
카드뮴화합물 (Cd로서) (mg/Sm ³)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0.02(12)이하 0.1(12)이하 0.2(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인 시설	0.02(12)이하 0.1(12)이하 0.2(12)이하
	나.기타시설	1.0이하	나.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0.02(12)이하 0.1(12)이하
			다.기타시설	1.0이하
	납화합물 (Pb로서) (mg/Sm ³)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처리시설은 200kg)/시간	0.2(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1)소각용량 2톤(감염성폐기물

오염물질	2009년 12월 31일까지		2010년 1월 1일 이후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배출시설	배출허용기준
	이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1.6(12)이하 5(12)이하	처리시설은 200kg/시간 이 상인 시설 (2)소각용량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3)소각용량 200kg/시간 미만 인 시설	1.6(12)이하 5(12)이하
	나.금속의 용융·제련 및 열처 리시설 중 용융로·용해로· 용광로 및 정련시설	10이하	나.제1차 금속제조시설, 조립금 속제품 제조시설의 용융·제 련 및 열처리시설 중 용융· 용해로·용광로, 도가니로, 전 해로	10이하
			다.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소각보일러포함) 중 생활폐기물 고형화연료제품 (RDF) 또는 플라스틱 고형화 연료제품(RPF) 전용시설 (1)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 톤/시간 이상인 시설 (2)고형화연료제품 사용량이 200kg/시간 이상 2톤/시간 미만인 시설	0.2(12)이하 0.1(12)이하
	다.기타시설	5이하	라.기타시설	5이하
크롬화합물 (Cr로서) (mg/Sm ³)	가.소각시설 또는 소각보일러	0.5(12)이하	가.폐수·폐기물·폐가스 소각 처리시설	0.5(12)이하
	나.기타시설	1.0이하	나.기타시설	1.0이하
구리화합물 (Cu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니켈 및 그 화합물 (mg/Sm ³)	모든 배출시설	20이하	모든 배출시설	20이하
아연화합물 (Zn로서) (mg/Sm ³)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모든 배출시설	10이하
비산먼지 (mg/Sm ³)	모든 배출시설	0.5이하	모든 배출시설	0.5이하
매연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	모든 배출시설	링겔만비탁표 2도 이하